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4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5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자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Ⅲ. 검토의견

1.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실시를 추가 신설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3. (생 략)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u>를 받을 수 없다. 1. ~ 7. (생 략)	<u>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8조(결격사유) ----- -----<u>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u>-----. 1. ~ 7.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에서 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직업정보제공사업(제2조의2제8호)에 관하여는 제23조에서 그 신고에 관하여 정하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는 제25조에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상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제25조제1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25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5조제3호)을 정하고 있고, 제25조제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28조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제1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과장된 직업정보로 인하여 구직자가 범죄조직으로까지 유인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하여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법률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로 제38조에 규정된 자, 예컨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부적격자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 및 직업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함으로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제34조에서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4조에서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25조제3호에서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라고 표현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짓 구인광고’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개정안 제25조제3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현행법 제34조 위반으로 제47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현행법 제34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에는 그 적용이 없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개정안의 추가 준수 사항인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2. 다. 2)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와 달리 직접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지 않고 단지 정보제공에 그치는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구직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개정안 제25조제3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업정보 내용을 모니터링 및 검증하면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 추가 조항을 통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허위·과장’이라는 표현 대신 ‘거짓’ 구인광고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